

의안번호	제 838 호
의결 연월일	2021년 월 일 (제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9월 8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838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주문

- 매년 5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사각지대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학생 개인정보 자동연계 대상의 범위를 현행의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지난 2월 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보다 학업 중단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어렵고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의 개인정보 연계율이 낮아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까지 개인정보 자동연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함.

## 3. 불임 : 건의안

## 4. 보낼 곳: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4~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초·중·고 학업중단자 현황(교육기본통계조사, '20. 8. 28.): 47,070명  
(‘16)→47,663명, (‘17)→50,057명, (‘18)→52,539명, (‘19)→52,261명

여성가족부의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75.5%가 학업 및 진로탐색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검정고시 준비, 진학 및 대입준비, 복학, 대안학교 진학 등을 통하여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기술을 배우며 취업 등을 준비하고, 심리 정서적 치유 및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핵심부서인 여성가족부는 2015년 199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2019년 기준 214개소까지 증설하며 ‘꿈드림’ 운영을 통해 교육 및 상담,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 지원 등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2017년 56,684명, 2018년 53,616명, 2019년에는 48,250명에 불과해, 30여만 명 규모의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중 20% 미만만이 도움을 받고 있어, 지원 대상의 발굴·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충청북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1,200~1,300여명 학생의 학업 중단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지원센터를 13개소까지 늘려가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6년 941명에서 2017년 870명, 2018년 741명, 2019년 723명, 2020년 668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센터의 지원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지원센터는 대상자 발굴·연계 및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개인정보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에,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복지 지원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 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대상 범위에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등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들만 포함되었을 뿐,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등학생들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과 대학 등 고등교육과정 및 사회로의 진출을 대비할 시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학교 밖에서의 지원이 절실힩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개정 법률에 의해서도 개인정보 자동연계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공적 관리 및 실질적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2021년 9월 14일

충 청 북 도 의 회